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 대상 투자신탁명 : 유리스몰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
- 주요 변경내용 :
 -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기업공시서식 개정 내용 반영 등
- 변경 시행일 : 2013년 1월 3일
- 변경 대비표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2012.09.18 : 책임운용인력 변경 (김현욱 →이준혁)
4. 집합투자업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부국증권 9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5. 운용전문인력	결산 전 자료	부책임용인력 기재 최근데이터 갱신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최저순자산액 미달위험 삭제
1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내용 삭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결산 전 자료	최근 내용 반영 (직전회계기간 : 2011.08.16~2012.08.15) 클래스별 유리한 투자기간 내용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결산 전 자료	최근 결산내용 반영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과거 데이터	최근 내용 반영
3. 집합투자기구	과거 데이터	최근 회계기간 종료일 기준 갱신

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가. 회사개요 이해관계인 :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는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 과거 데이터 라. 운용자산규모 - 과거 데이터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 최근 내용 갱신 라. 운용자산규모 - 최근 내용 갱신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신주소갱신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 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④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 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④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 대상 투자신탁명 : 유리스몰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
- 주요 변경내용 :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서식 전면 개정 등
- 변경 시행일 : 2013년 1월 3일
- 변경 대비표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 내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1. 투자운용 인력	-	부책임용인력 기재 운용현황 업데이트
6. 투자실적 추이	-	연평균수익률 삭제 연도별수익률 업데이트 [2012.08.15 기준]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결산 전 데이터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직전회계기간 2011.08.16~2012.08.15] 업데이트
III. 요약재무정보		
-	결산 전 데이터	2012.08.15 현재 업데이트

신탁계약 변경 대비표

- 대상 투자신탁명 : 유리스몰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
- 주요 변경내용 :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등
- 변경 시행일 : 2013년 01월 03일
- 변경 대비표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p>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p> <p>2~5.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p> <p>2~5. (현행과 같음)</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p>
제54조(관할법원)	<p>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중략) ...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p>	<p>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중략) ...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p>
부칙(시행일)	<신설>	이 신탁계약은 2013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